

1. 개정이유

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를 현행화 하는 내용 등으로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을 별지서식에 반영하고, 현행 별지서식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행정서식의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.

2. 주요내용

가. 별지서식 개정

○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-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(안 별지 제16호서식)
-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(안 별지 제17호서식)

○ 현행 미비점 개선

-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(안 별지 제6호서식) 등 7건
- 근거조문 수정, 자구 수정 등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생략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6호서식 중 “시행규칙 제6조제1항”을 “시행규칙 제6조”로 한다.

별지 제7호서식 중 “수량/면적(m²)”를 “수량/등록면적”으로 한다.

별지 제8호서식 1쪽 중 “수량/면적”을 “수량/등록면적”으로 하고, 2쪽 중 “면적”을 “지적면적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0호서식 첨부서류란 제3호 중 “제16조제5항”을 “제16조제2항”으로 각각 한다.

별지 제16호서식과 별지 제17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란 중 “건축물외의 시설물인 경우”를 “건축물외의 경우”로 각각 한다.

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31호서식 대상물란 중 “제작자 및 제작연도”를 “제작·건설·형성자 및 제작·건설·형성연도”로 하고, 행정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행정사항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(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) 시·도지사는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5조제3항에 따라 예비문화유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
1.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시·도지사의 검토의견서
2. 시·도지사의 조사보고서
3. 시·도위원회의 심의 관련 자료
4.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위치도, 지적도 및 지형도면

별지 제32호서식 중 “(제작연도)”를 “(건설·제작·형성연도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근현대문화유산지구 대장

(5쪽 중 1쪽)

관 리 번 호		
명 칭	한글	한자
	영문	
지 정 일		
위 치		
지 정 면 적		
지 정 근 거		
근현대문화유산 등 현황 (명칭, 수량 등 주요사항 표기)	지정 문화유산	
	등록 문화유산	
	예비 문화유산 및 우수 건축자산	
	기타	

근현대문화유산지구 정비 상황(현상변경, 보수·정비 등)

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 근현대문화유산 등 현황

1. 지정문화유산 현황

연 번	구분 (국가, 시·도)	소재지	등록일	말소일	지번	지목	지적 면적	지정 면적	소유자		비고
									주소	성명	

2. 등록문화유산 현황

연 번	구분 (국가, 시·도)	소재지	등록일	말소일	지번	지목	지적 면적	등록 면적	소유자		비고
									주소	성명	

3. 예비문화유산 및 우수건축자산 현황

연 번	소재지	선정· 등록일	말소일	규모 (층수/연면적)	건립연도	소유자	비고

4. 기타 현황(그 외 국가유산(비등록 문화유산 포함) 등)

연 번	유산 구분	소재지	주요 보존 가치	규모	건립연도 (또는 시행시기)	소유자	비고

특례적용 현황(건폐율 · 용적률 완화, 국고보조금 등)

[illegible]

지적(地籍) · 지형도 / 도면 / 사진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~ 제29조(생 략)	제1조 ~ 제29조(현행과 같음)